

##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발의년월일 : 1998. 6. 22.

발의자 : 이근수 교육위원 외 3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(법률 제5467호; 1997.12.17.)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(대통령령 제15611호; 1998. 1.20.)됨에 따라,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한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(안 제2조)
- 나.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, 투·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(안 제2조)

### 3. 제안근거

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15611호 ; 1998. 1.20.)

### 4. 조례안 : 덧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) 선거인, 선거사무종사자, 투·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.

1. 선거인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
2. 선거사무종사자, 투·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 : 1일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